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2가단1023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환철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66,841,3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841,36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C는 2017. 2. 3. D(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오면서 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위 카드대금채권은 E(주)를 거쳐 2018. 1. 19.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양수한 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834929호)를 제기하여 2019. 11. 26.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C에 대한 이 부분 채권액은 1,975,894원 및 그 중 금 999,888원에 대하여 2021.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2) F(주)는 2017. 3. 21. C에게 1,000만 원을 만기 2019. 4. 25.,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7.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C는 위 차용금의 상환을 연체하였다. F(주)는 2018. 10. 26. 원고에게 위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양수한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71307호)을 신청하여 2019. 7. 9. 발령된 지급명령이 2019. 9. 20. 확정되었다. 원고의 C에 대한 이 부분 채권액은 20,537,562원 및 그 중 9,390,371원에 대하여 2021.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3) (주)G은 2017. 1. 24. C에게 2,2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약정금리 연 26.9%, 연체금리 연 27.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는 위 차용금의 상환을 연체하였다. 위 대여금 채권은 H(주)를 거쳐 2019. 12. 13.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양수한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2020차전4652호)을 신청하여 2020. 7. 10. 발령된 지급명령이 2020. 8. 29. 확정되었다. 원고의 C에 대한 이 부분 채권액은 44,327,910원 및 20,302,428원에 대하여 2021.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4) 결국 원고의 C에 대한 2021. 8. 26. 기준 채권총액은 66,841,366원(1,975,894원 + 20,537,562원 + 44,327,910원)에 달한다.

나.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 1) C는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7. 4. 25.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증여하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17.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16. 8. 25. 채권최고액 1억 6,38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주)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사해행위 이후인 2017. 6. 13. 말소되었고, 이어 2017. 6. 15. 채권최고액 7억 7,600만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 C의 재산상황

- 1) C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고, 원고 외에도 여러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2)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5. 당시의 시가는 220,085,889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1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원고를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뚜렷한 책임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추인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가 2016. 8. 25. E로부터 1억 1,6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매도대금과 자신의 사업소득 및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돈 등을 재원으로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결국,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사해행위 후에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명하게 되면 당초에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로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이 법원의 E(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20,085,889원인 사실, 이 사건 증여 이후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 사건 증여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1억 2,600만 원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94,085,889원(= 220,085,889원 - 126,000,000원)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이는 앞서 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한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는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 66,841,3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6,841,3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형순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빌라[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7층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1층 533.367㎡, 2층 및 3층 각 576.154㎡, 4층 및 5층 각 350.400㎡,

6층 344.940㎡, 7층 275.430㎡, 지층 799.30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 1026.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19.580㎡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026.3분의 41.273 끝.

